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4

발의년월일 : 2006. 6. 5
발 의 자 : 최광렬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하구 행정기구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조정·정비하고 소관 업무와 적합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조제2항제3호)

나.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조정·정비(안 제3조제2항제2호·제3호)

(동사무소 소관에 관련된 사항 삭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 업무 조정)

다. 특별위원회 명칭·기능 정비(안 제7조제3항, 제8조 제1항)

라.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 의결 보완(안 제6조 제5항 신설)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사회도시위원회"를 "도시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라」 목을 삭제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위원회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8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 1 ~ 2. (생 략) 3. 사회도시위원회 7명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 1 ~ 2. (현행과 같음) 3. 도시위원회 7명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생 략) ②(생 략) 1. (생 략) 2.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각 동사무소 업무중 위의 실·국·과 소관에 관련된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각 동사무소 업무중 위의 국·과 소관에 관련된 사항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3. 도시위원회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6조(상임위원장) ① ~ ④(생 략) (신 설)	제6조(상임위원장)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 ②(생 략) ③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④(생 략)	제7조(특별위원회)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현행과 같음)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생 략) (단서 신설) ② ~ ③(생 략)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현행과 같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 ③(현행과 같음)